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56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영주·강은미·김영호

노웅래 • 박광온 • 안민석

유정주 • 이동주 • 이용선

임오경 · 전해철 · 정필모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되,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·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관할구역 안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2개소가 부족할 수 있고, 공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해서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할필요가 있음.

이에,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,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218조의17제2항). 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4만명"을 각각 "3만명"으로, "2개소"를 "3개소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4만명"을 "3만명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외투표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218조의17제2항의 개 정규정은 2022년 3월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 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	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
· 운영) ① (생 략)	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	2
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	
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	
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	
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	
외의 시설·병영 등에 추가로	
재외투표소를 설치 · 운영할 수	
있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사유	
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	
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	
<u>4만명</u> 을 넘으면 이후 매 <u>4만명</u>	<u> 3만명</u> <u>3만명</u>
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	
• 운영하되, 추가되는 재외투표	
소의 총 수는 <u>2개소</u> 를 초과할	<u>3</u> 개소
수 없다.	·.
1.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	1 <u>3</u>
<u>만명</u>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	<u>만명</u>
는 경우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